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 
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대한 인용 조항 오기사항을 정비하기  
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인용 조항의 오기 사항 정정(안 제8조)

- 제6조제1호 각 목 → 제6조 각 호

5. 검토내용

○ 상위 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
법률」 제11조의2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‘공공건물 및

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'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음.

- 상위 법령에 따라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제6조제1호 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) 뿐만 아니라 제2호(공동주택) 및 제3호 (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)를 모두 포함하였어야 했으나 인용 조항의 오기로 제2호와 제3호가 누락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대한 인용 조항 오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